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537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등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 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의원안)	2

I. 개요

1. 조지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53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조지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5. 16.
- (3) 회 부 일 : 2025. 5.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상당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장기 근속을 유도를 위해서라도 근로소득증대 세제의 공제율을 높이고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근로소득 증대에 따른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25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안 제29조의4).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등(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제29조의4) ○ 기본공제(제29조의4제1항) ○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u>20%(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연장 및 중소기업 공제율 상향 ○ 기본공제(제29조의4제1항) ○ (현행과 같음)
○ 정기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제29조의4제3항) ○ 요건 ① 해당 과세연도에 정기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 공제액: 정기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u>20%(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 공제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u>25%(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조지연의원안) ○ 적용기한: <u>2027. 12. 31.(김주영의원안)</u> <u>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u> <u>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정기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제29조의4제3항)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정기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u>25%(중소기업)</u> 또는 10%(중견기업) (조지연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제29조의4제5항) ○ 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 증가율*보다 클 것 *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3.2% ('18·'19: 3.6%, '20·'21: 3.8%, '22: 3.0%, '23·'24: 3.2%) 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공제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u>20%</u> ○ 적용기한: <u>2025. 12. 31.</u>	○ 적용기한: <u>2027. 12. 31.(김주영의원안)</u> <u>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u> <u>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제29조의4제5항) ○ (현행과 같음) ○ 공제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u>25%</u>(조지연의원안) ○ 적용기한: <u>2027. 12. 31.(김주영의원안)</u> <u>2028. 12. 31.(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u> <u>2030. 12. 31.(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최기상의원안)</u> ○ 시행일: <u>2026. 1. 1.(김주영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정부안, 최기상의원안)</u> <u>공포한 날(윤준병의원안)</u>

* 김주영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44), 윤준병의원안 2025. 3. 20. 발의(의안번호 9180), 이인선의원안 2025. 5. 8. 발의(의안번호 10398), 조지연의원안 2025. 5. 16. 발의(의안번호 10537), 추경호의원안 2025. 8. 12. 발의(의안번호 12138),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3), 최기상의원안 2025. 10. 28. 발의(의안번호 13767)

□ 각 개정안은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김주영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이인선의원안, 조지연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최기상의원안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 추가 세액공제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모두 연장하는 것인 반면, 정부안은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적용기한만 연장하려는 것임.

한편, 조지연의원안은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음.

□ 현행법 제29조의4에 따른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제도로써, 2014년 세법개정 당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①근로소득 증대, ②배당소득 증대, ③기업소득 환류)’의 일환으로 신설되었음.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추가공제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 완화, 공제율 상향 등 지속적으로 혜택이 확대되면서 적용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며,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대상기업에서 대기업을 제외하였음.

[근로소득 증대세제 주요 개정연혁]

시행시기	개정내용
2015년	☐ 근로소득 증대세제 신설(제29조의4제1항) - 공제요건: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공제금액: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중소·중견), 5%(대)
2016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추가 공제 신설(제29조의4제3항) - 공제요건: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소), 10%(중견), 5%(대)
2017년	☐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증가 요건 완화(제29조의4제5항) - 공제요건: ① 상시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전체 중소기업 임금증가율(시행규칙 규정)보다 클 것 ② 직전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음수가 아닐 것 - 공제금액: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 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20%
2018년	☐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 상향 - 일반 근로소득 증대세제(제29조의4제1항) 공제율: 중소기업 10% → 20%
2021년	☐ 적용기한 2년 연장 - 2021.1.1. ~ 2022.12.31.
2023년	☐ 적용기한 3년 연장 및 공제대상에서 대기업 제외 - 2023.1.1. ~ 2025.12.31.

한편,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조세지출 실적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된 2018년에는 133억원, 2019년 124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09억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상황 악화에 따라 감소하였고 2022년과 2023년에는 다시 조세지출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2024년에는 감소하였음.

[근로소득 증대세제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세	1	4	20	36	42	53	67	44	37	38
법인세	93	129	104	73	70	108	160	99	84	86
합계	94	133	124	109	112	161	227	143	121	124

주: 2025년,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고용자 수를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소득 증대를 통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민간소비 확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둘째, 동 특례는 2023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과 완화된 임금증가 요건 적용 등 우대조치가 마련되어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조지연의원안과 같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인상할 경우 임금격차 해소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287.4만원으로 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모별 월 평균소득]

(단위: 만 원)

구분	대기업(a)	중소기업(b)	평균소득 격차(a-b)
2023년	593	298	295
2022년	591	286	305
2021년	563	266	297
2020년	529	259	270
2019년	515	245	270
최근 5년 평균	558.2	270.8	287.4

자료: 연도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통계청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특례의 목표는 신규고용 창출 및 기고용자의 임금상승을 통한 가계소득의 증대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목표이지만, 세부담 감소가 익년도에 임금 및 고용의 증가를 발생시키지 않고 기업의 투자 혹은 사내유보를 증가시킬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¹⁾

둘째, 동 특례가 임금 인상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평균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한 기업을 사후적으로 보조하는 기능만 수행한다는 분석이 있음.²⁾

기업의 임금 인상은 인사·조직·재무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내리는 의사결정이라는 점, 임금 인상규모 만큼 세액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인 임금 인상분 대비 추가적인 인상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추가 증가분의 일정 비율 만큼 세액공제가 이

1) 기획재정부·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2020.9. p.5

2) 기획재정부·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22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2022.12.. p.176

루어져 공제규모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동 특례의 효과는 경영여건이 양호한 기업이 내부적인 필요에 따라 평균 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이를 보조하는 것에 그칠 우려가 있음.

셋째,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5%p 상향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현행 제도 하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할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대비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넷째, 정부안은 법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의 적용기한만 연장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공제 및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먼저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 세액공제의 경우 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³⁾의 경우에도 2024년 일몰이 도래

3)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한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관적인 조치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세제지원의 필요성은 있어 보임.

또한 법 제29조의4제5항은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 여력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중소기업 평균보다 임금 증가율이 높을 경우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면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특례도 함께 연장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법 제29조의4제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 임금증가분 추가공제와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요건 완화에 대해서는 제출된 정부안과 달리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 따르면,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4제1항, 제3항 및 제5항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20) 근로소득 중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중대세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적용요건) ❶&❷ 또는 ❷&❸ ❶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❷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❸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중대 지원

□ 한편, 적용기한의 적정 수준에 대해서는, ① 적용기한을 길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대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과 ② 적용기한을 짧게 연장하는 경우 조세특례에 대한 주기적·지속적 점검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4